

2015년 경기도 재정공시[예산]

○ 경기도 재정공시 제1호(2015. 2. 27)

경기도지사(인)

◆ 우리 도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92,717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5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72,335억 원)보다 120,382억 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0,966억 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9,696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7,450억 원입니다.

◆ 우리 도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9.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1.4%입니다.

◆ 우리 도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 원의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산담당관 김동천(8008-2124)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경기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192,717	171,137	21,580	72,335	66,526	5,809
	세 출 예 산	192,717	171,137	21,580	72,335	66,526	5,809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49.9	48.7	1.2	30.3	29.1	1.2
	재 정 자 주 도	51.4	51	0.4	42.3	42.7	△0.4
	통 합 재 정 수 지	-19	-1,748	1,729	89	-98	187
③ 재정운용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9,271,679	14,811,132	2,139,712	1,174,065	1,146,7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320,876	16,459,873	16,716,384	17,113,667	19,271,6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066,031	100	12,093,911	100	12,542,424	100	12,929,230	100	14,811,132	100
지 방 세	6,299,000	56.9	7,133,300	59	7,324,100	58.4	6,581,900	50.9	7,657,700	51.7
세외수입	885,148	8	873,136	7.2	805,034	6.4	433,586	3.4	438,856	3
지방교부세	223,228	2	202,169	1.7	229,374	1.8	260,068	2	190,500	1.3
보 조 금	3,343,959	30.2	3,685,306	30.5	3,933,916	31.4	4,819,184	37.3	5,779,072	39
지 방 채	314,696	2.9	200,000	1.6	250,000	2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834,492	6.4	745,004	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9,271,679	14,811,132	2,139,712	1,174,065	1,146,7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320,876	16,459,873	16,716,384	17,113,667	19,271,6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1,066,031	100	12,093,911	100	12,542,424	100	12,929,230	100	14,811,132	100
일반공공행정	2,855,901	25.8	2,850,473	23.6	2,950,029	23.5	2,915,547	22.6	3,423,625	23
공공질서 및 안전	161,365	1.5	198,521	1.6	181,436	1.5	133,321	1	208,964	1.4
교 육	1,799,599	16.3	2,045,460	16.9	2,138,028	17.1	1,746,460	13.5	2,007,590	13.6
문화 및 관광	230,631	2.1	223,565	1.9	225,313	1.8	217,316	1.7	301,876	2
환경보호	615,596	5.6	773,500	6.4	702,181	5.6	644,924	5	759,518	5
사회복지	2,578,512	23.3	2,885,189	23.9	3,490,132	27.8	4,545,953	35.1	5,011,334	33.8
보 건	156,688	1.4	183,600	1.5	196,208	1.6	199,632	1.5	232,969	1.6
농림해양수산	473,504	4.3	501,521	4.2	471,976	3.8	402,660	3.1	459,737	3.1
산업·중소기업	187,742	1.7	192,319	1.6	106,393	0.9	66,194	0.5	131,496	0.9
수송 및 교통	892,360	8.1	913,045	7.6	814,756	6.5	778,799	6	967,893	6.5
국토 및 지역개발	382,938	3.5	535,745	4.4	437,484	3.5	393,805	3.1	421,902	2.9
과학기술	38,732	0.4	39,389	0.3	36,340	0.3	32,325	0.3	35,320	0.3
예비비	98,479	0.9	106,644	0.9	110,580	0.9	116,304	0.9	62,627	0.5
기 타	593,984	5.1	644,940	5.2	681,568	5.2	735,990	5.7	786,281	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0,279,771	20,797,787	20,971,898	21,331,992	21,675,540	105,056,988	1.7%
자 체 수 입	8,733,391	9,031,187	9,160,259	9,426,605	9,723,421	46,074,864	2.7%
의 존 수 입	6,803,980	6,956,306	7,035,689	7,173,263	7,388,985	35,358,223	2.1%
지 방 채	710,000	722,064	720,452	731,262	724,038	3,607,816	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32,400	4,088,230	4,055,498	4,000,862	3,839,096	20,016,085	-1.2%
② 세 출	20,279,771	20,797,787	20,971,898	21,331,992	21,675,540	105,056,988	1.7%
경 상 지 출	4,105,008	4,448,364	4,257,305	4,331,359	4,283,775	21,425,811	1.1%
사 업 수 요	16,174,763	16,349,423	16,714,593	17,000,633	17,391,765	83,631,177	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경기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9.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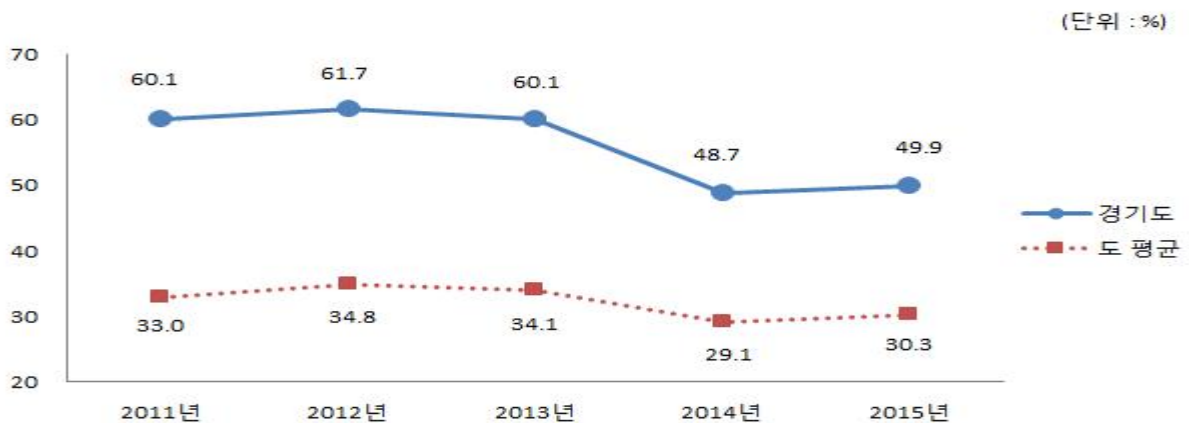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49.9%	13,415,532	6,700,956	5,969,572	-	745,004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0.1%	61.7%	60.1%	48.7%	49.9%
최종예산	55.9%	61%	56.1%	50.5%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49.9%로 동종자치단체(도)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 22.15%가 높습니다. 2015년의 경우 지방세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소폭(1.2%) 상승했습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경기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1.4%	13,415,532	6,891,456	5,779,072	-	745,004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2.4%	63.6%	62.2%	51%	51.4%
최종예산	58.4%	62.9%	59%	52.8%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51.4%로 동종자치단체(도) 평균 재정자주도 보다 9.1%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동종자치단체(도)보다 적어, 도 자율적으로 집행할 재정운영의 자율성은 동종자치단체(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경기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5,344,157	16,129,973	576,675	538,700	-37,975	745,898	16,091,998	△747,840	△1,943
일반회계	14,300,132	14,036,256	4,000	-	-4,000	114,000	14,032,256	267,877	381,877
기타 특별회계	863,534	1,174,065	-	-	-	29,723	1,174,065	△310,532	△280,809
공기업 특별회계	144,764	822,116	289,483	219,200	-70,283	602,175	751,833	△607,068	△4,893
기 금	35,727	97,536	283,192	319,500	36,308	-	133,844	△98,117	△98,11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500,934	-763,073	-680,074	-657,420	-747,840
통합재정수지 2	34,493	-85,838	-140,324	-174,805	-1,943

- ☐ 순세계잉여금을 경기도의 순수재정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을 경우 통합재정수지(1)는 7,478억원 적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경기도의 순수재정수입으로 포함할 경우 통합재정수지(2)는 19억원 적자로 2014년보다 적자규모는 1,72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보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633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경기도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77	1,801,973
여성정책추진사업	95	1,740,5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9	59,61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80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gg.go.kr/>)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4,811,132	52,487	모델안 2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운영계획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위원회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타 부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52,487	
농식품유통과	쌀 관세화에 대비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	215	계속사업
자원순환과	주택가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모델	195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초록쓰다드미(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적용 방안)	42	"
건설본부 신청사건립추진단	도 신청사 건립	5,000	신규사업
재난안전과	경기도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236	계속사업
관광과	중국 5% 부유층 유치사업 조성	934	"
농식품유통과	꼬마손 농부되어보기	454	"
소방행정과	119 소방대원 2군 예비인력 양성안	5,312	"
노인복지과	경기도 복지비 경감대책	9,871	"
무한돌봄 복지과	지역형 기초보장제 도입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21,092	"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60	"
문화정책과	제1회 경기도 노인장애인 향토문화탐방	8,989	"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운영	87	"